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023-84 제출연월일: 2023년 8월 일

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및 기존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 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21조(특별휴가) 제12항의 특별휴가 대상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 신설 및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6조(휴가의 종류), 제7조의7 (특별휴가)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3. 8. 11. ~ 2023. 8. 16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제외 대상 통보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"별표1"을 "별지 1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별표2"를 "별표 2"로 한다.

제3조 중 "구민"을 "주민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별표3"을 "별표 3"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차별없"을 "차별 없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소속기관의 장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제16조 중 "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1항"을 "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"으로, "별표4"를 "별표 4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별표6"을 "별표 6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「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"을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"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, 30년 이상

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제25조 앞에 "제3장 영리업무의 금지"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복무선서) ① (생 략) | 제2조(복무선서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의 선서는 <u>별표1</u> 의 선 | ② <u>별지 1</u> |
| 서문에 따른다. | |
| 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<u>별표</u> | ③ <u>별표</u> |
| <u>2</u> 와 같이 한다. | <u>2</u> |
| 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<u>구민</u> | 제3조(책임완수) <u>주민</u> - |
|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 | |
| 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| |
| 하여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맡은 | |
|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 | |
| 제5조(근무기강 확립) ① (생 략) | 제5조(근무기강 확립) ①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② 공무원은 <u>별표3</u> 의 공직자의 | ② <u> </u> |
|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 | |
| 제6조(친절·공정) ① (생 략) | 제6조(친절・공정) ① (현행과 같 |
| | 승) |
| ② 삭 제 | |
|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| ③ |
|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<u>차별없</u> | <u>차별 없</u> |
| 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| |
| 한다. | |
| 제8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(생 | 제8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(현행 |
| 략) | 과 같음) |
|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・사변 | ② 구청장 |

또는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 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 하게 할 수 있다.
- 제16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 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<u>별표4</u>와 같이 한 다.
- 제21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 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 사가 있을 경우에는 <u>별표6</u>에 따 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· ③ 삭 제
 - ④ (생략)
 -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

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구 |
| <u>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</u> |
|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 |
| 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|
| <u>할 수 있다.</u> |
| 제16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|
| 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<u>「지방공</u> |
| 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 |
| |
| |
| |
| <u>별표 4</u> |
| <u>.</u> |
| 제21조(특별휴가) ① |
| |
| <u></u> |
| |
| |
| 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 |
| |

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 학교 설치령 | 에 따른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- ⑥ ~ ⑨ (생 략)
- ① · ① 삭 제
-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 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 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 | 공무원 복무규정 | 을 따른다. | (신설 2014.2.26, 개정 2020.10. 7.)

① (생략) 제3장 영리업무의 금지

| | | | 「한국방 | 송통신 | <u>l</u> 대 |
|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
| 학교 | 설립 | 및 | 운영에 | 관한 | 법 |
| 률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_ — — - | | | |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| ⑩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 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 당 재직기간 중 10일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 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이 | 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 직기간 중 25일, 30년 이상인 공 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 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① ~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제4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| 성명 |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78 78 | (담당 : 행정7급 양동혁) |
| 연락처 | 02-2600-6035 |
| | |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○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및 기 존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 이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제21조(특별휴가) 제12항의 특별휴가 대상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 신설 및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5년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를 신설하는 등 강서구 공무원의 내부적인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 으로.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함.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| 평 가 번 호 | 2023-18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자치법규명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| | | | |
| 평가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| 직 급 | 행정7급 | 성 명 | 정용훈 |
| 입안주무부서 | 행정지원과 | | 2023. 8. 14. | | |
| 관련조문 | | 검토결과 | | 조치사항 | |
| - 조례 일부개정안 | | - 부패유발 요인 없음 | | - 원안동의 | |

| 성별영 | 향평가서 | 제출 제 | 외 통도 | 브 확인서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2023A서울강서016 | | | |
| 정 책 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| | | |
|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 |
| 소관부서 | 부서명 | 행정지원과 | | |
| | 담당자명 | 양동혁 | 전화번호 | 02-2600-6035 |
|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 |
| 담당부서 | 부서명 | 가족정책과 | | |
| | 담당자명 | 안소현 | 전화번호 | 02-2600-6762 |
|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| 2023년 08월 11일 | | | |
| 완료(제외) 통보일자 | 2023년 08월 1 | 7일 | | |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08월 17일

붙임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6조(휴가의 종류)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(公暇)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